

2024학년도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

군산흥남초등학교

1. 목적

-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인식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2.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2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3. 추진 내용

가.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 1) 인성교육계획 주간(3월, 9월)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학교폭력근절을 다짐하는 계기 마련
-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교직원 연수
 -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교직원 의무연수 통합과정 원격연수 수강(전북교육연수원)
-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 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학부모 연수 : 교육과정설명회
 - 나) 학교폭력 예방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 학기별 1회 발송(3월, 9월)
 - 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어울림프로그램 안내 : 학급별로 안내
- 4)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학교 선정
 - 가) 사제동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존중감 및 감정조절능력 향상
 - 나) 어울림프로그램 및 사이버 어울림프로그램(총 5차시) 각 학년별 교육과정 반영

4. 추진 계획

가. 인성교육주간

- 1) 일시 : 1학기 2024년 3월 18일(월) ~ 3월 22일(금)
2학기 2024년 9월 2일(월) ~ 9월 5일(목)
- 2) 내용 : 가정폭력예방교육, 도박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인성교육, 생명존중교육, 인권교육, 도박예방교육

날짜	교육내용	시간	장소	대상	비고
3.18(월)	가정폭력예방교육	1시간	각 교실	전교생	도덕(바른생활)
3.18(월)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고 현명하게 말하는 법		가정	학부모	안내장 (붙임1)

3.19(화)	도박예방교육	1시간	각 교실	전교생	도덕(바른생활)
3.20(수)	아동학대예방교육	1시간	각 교실	전교생	창체(자율활동)
3.21(목)	학생인성교육	2시간	각 교실	전교생	도덕(바른생활) 국어
3.22(금)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2시간	각 교실	전교생	도덕(바른생활) 국어

나) 2학기

날짜	교육내용	시간	장소	대상	비고
9.2(월)	학교폭력예방교육	2시간	각 교실	전교생	도덕(바른생활) 국어
9.2(월)	아동 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가정	학부모	안내장 (붙임2)
9.3(화)	인권교육	2시간	각 교실	전교생	창체(자율활동)도덕(바른생활)
9.4(수)	인성교육	2시간	각 교실	전교생	창체(자율활동)
9.5(목)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2시간	각 교실	전교생	도덕(바른생활) 국어

나. 교사 연수 및 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교육 운영

1) 교사 연수

구분	운영 방법	대상 (담당)	내용
1학기	2024.03.20. 14:00~15:00 교육과정설명회	강당 강의	교직원 (학폭)
2학기	2학기 시작일 ~ 2학기 종료일	전북교육연수원 의무연수 이수	교직원
			-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전담조사관 조사)
			- 교원의무연수 과정 1,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포함) 의무연수 과정 이수

2) 학생교육

-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도박예방교육: 어울림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54시간, 도박예방 1시간 실시 (사이버폭력예방 어울림프로그램 1시간 포함)
 - 창의적체험활동 및 교과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
 -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 및 PPT자료 등을 활용하여 담임교사가 교육 실시
 - 관련 자료는 담당교사가 제공
 - 어울림프로그램 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폭력예방교육 2시간, 자살예방교육 2시간은 인성교육주간에 실시
- 3) 학교폭력예방교육 관련 학부모 연수
- 1학기 : 교육과정설명회 때 실시 및 가정통신문 발송
 - 2학기 : 2학기 학부모상담주간에 실시 및 가정통신문 발송

다. 2024년 학생 상담 주간 운영 계획

- 1) 일시 : 1학기 2024년 4월 8일(월) ~ 4월 12일(금)
2학기 2024년 9월 9일(월) ~ 9월 13일(금)
- 2) 상담자 : 각 담임교사

- 3) 상담대상 : 각 반 1학생 1회 이상 상담 실시
- 4) 상담내용 : 학교폭력, 학업, 가정생활 등 학생 개인 상담 실시 후 상담일지 작성

라. 학교폭력 실태 온라인 설문조사

- 1) 일시 : 2024년 연 2회(1학기, 2학기)
- 2) 대상 : 4~6학년 학생

마. 학교폭력 예방 홍보 . 캠페인 활동

- 1) 홍보자료 홈페이지 게시
 - 주제: 2024년 학교폭력 예방교육안내
 - 내용 : 학교폭력 징후 파악 및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홍보
- 2) 포스터, 벽보 게시
- 3) 학교폭력예방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바.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선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 1) 일시 : 2024년 3월~12월
- 2) 대상 : 전교생
- 3) 내용 : 사례동행 프로그램, 친구사랑 활동 도래 상담 활동,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사학습 공동체 운영, 학교폭력예방캠페인 활동, 언어폭력예방 UCC제작,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 등 실시

사. 위기학생 대응체제 구축

- 1) 자살 위기 학생 상담 및 관리 강화
- 2) 위기관리 위원회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직
- 3) 학교전담경찰관 및 담임교사와 SNS 친구 맺기 활용
- 4) 자살(자해) 사안 인지 시 : 자살(자해) 시도 10일 이내, 자살 사안 5일 이내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동시 보고

아. 2024학년도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교육 계획

학생	교직원	학부모
- 학교폭력예방교육 연 6회 (어울림프로그램 5시간 + 사이버폭력예방교육 1시간) - 가정폭력예방교육 연 1회 - 도박예방교육 연 1회 - 인성교육 연 4회 - 아동학대 예방교육 연 1회 - 자살예방교육 연 4회 (어울림프로그램 2시간 + 학급예방교육 2시간) - 인권교육 연 4회(학기당 2시간)	- 학교폭력예방교육 연 1회 - 학생 자살예방교육 연 4회 - 가정폭력 예방교육 연 1회 - 도박예방교육 연 1회 - 아동학대 예방교육 연 1회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1회 - 인권교육 연 2회 (학기당 1회 이상) - 인성교육 연 1회	- 학교폭력예방교육 연 2시간 (학기당 1회 이상) - 자살예방교육 연 2회 - 도박예방교육 연 1회 - 아동학대 예방교육 연 1시간 - 가정폭력 예방교육 연 1회 - 인권교육 연 2회
* 교과 및 창체 시간 연계 교육	* 교직원 의무연수 통합과정 원격연수 수강(전북교육연수원)	* 교육과정 설명회 시 교육 및 가정통신문 발송

자. 비폭력 서약서(교육부: 책임규약) 작성 및 운영

서식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서식**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1. 책임규약 목적

•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학교 또는 경찰(117)에 신고해 주세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 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피해학생과 분리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호(서면사과), 2호(적축,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존중해 주세요.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보호자/학부모>	
<학생>	<교사>
✓ 학교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겠습니다. ✓ 선생님을 존중하고 모두에게 예의를 지킵니다. ✓ 장난으로 친구를 괴롭히지 않고, 존중하겠습니다. ✓ 단지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괴롭힘, 언어폭력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대화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선생님께 알려겠습니다.	✓ 학교 규칙과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하겠습니다.. ✓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고운말로 소통하겠습니다. ✓ 학교의 교육이념을 지지하고 학교 구성원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겠습니다. ✓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교사, 학부모와 협력하겠습니다. ✓ 수업시간을 내실화있게 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성명 (서명)
 보호자/학부모 성명 (서명)
 교사 성명 (서명)

2024. 3. 28.
 군 산 흥 남 초 등 학 교 장

5. 기대효과

가. 명랑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가 조성

나. 배려 정신으로 긍정적인 교우관계가 형성

다. 지역사회 및 학부모와 유기적인 체제의 형성